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정상우) 추천안

의 안 변 호	2236
------------	------

제안연월일 : 2024. 7.

제 안 자 : 의 장

주 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에 따라 정상우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한다.

제안이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에 따라 국회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기 위한 것임.

추천 대상자

- 성 명 : 정상우(鄭相宇)
- 생년월일 : 1968.09.19.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xx길 xx, xxx동 xxx호
(수서동, xxxxxx)

※ 붙 임

1. 추천서 1부.
2. 직업·학력·경력에 관한 사항 1부.
3. 공직후보자 병역신고사항 1부.
4. 최근 5년간 국세·지방세 납부 및 체납에 관한 사항 1부. 끝.

추천서

1. 추천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2. 추천 대상자

성명 : 정상우

생년월일 : 1968.09.19.

3. 추천 사유

상기 추천 대상자는 1992년 제36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이후 총무처와 통일원에서 근무했고, 감사원에서 1급 공직감찰본부장으로 퇴직할 때까지 약 29년간 공직 생활을 하였음. 이러한 공직 경험을 통해 행정 감찰과 정책 감시 분야에서 뛰어난 전문성과 경험을 쌓았음.

특히 공직 비리 감사를 총괄하는 감사원 공직감찰본부장을 역임함으로써 추천 대상자가 공직 윤리와 감찰 업무에 대해 깊은 이해를 하고 있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기능 중 하나인 공공기관의 부패방지과 청렴성 강화에 있어 효과적인 전략을 제시할 수 있으며, 감사원에서 관련 사례와 문제를 다루어 본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책 및 수립 및 시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감사원 퇴직 이후에는 다양한 민간 기업에서 고문으로 활동하며 기업

내부의 통제 시스템과 감사 기능을 강화하여, 공공은 물론 민간 기업의 자정 능력을 제고하는데 기여하였음.

또한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겸임교수로 재직하며 학문과 실무를 접목시켜 후진 양성에도 힘쓰고 있으며, 국가와 사회에 대한 헌신을 인정받아 국가로부터 대통령표창(2002)과 홍조근정훈장(2021)을 수상함.

상기 추천 대상자는 위와 같은 풍부한 공직 경험과 민간 부문에서의 활동을 통해 정책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요구하는 국민의 권익 보호와 공공기관의 부패방지, 행정제도 개선 등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책임자로 판단되어 추천하는 바임.

직업 · 학력 · 경력에 관한 사항

- 이 력 서
- 졸업증명서
- 재직증명서
- 경력증명서

이 력 서

성 명 : 정상우

생년월일 : 1968.09.19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xx길 xx, xxx-xxxx
(수서동, xxxxxxxx)

직 업

(주)장민이엔씨 상임감사, 서영주정(주) 비상임감사, 경희대학교 겸임교수

학 력

1988. 3. 1. ~ 1992. 2. 26. 서울대학교 경제학 학사

1993. 3. 1. ~ 1997. 8. 30.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2012. 3. 1. ~ 2023. 2. 27. 연세대학교 기술정책협동과정 박사

경 력

1992.11.26. 제36회 행정고시(재경직) 합격

1993.4.19. ~ 1998.7.7. 총무처(수습), 통일원, 군복무

1998.7.8. ~ 2022.7.17. 감사원(1급 공직감찰본부장으로 퇴직)

2022.8.1. ~ 2023.7.31. 에스케이에스프라이빗에쿼티(주) 고문

2022.8.1. ~ 2023.10.31. (주)스카이뷰 고문

2023. 3.1. ~ 현재.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겸임교수

2023.10.1. ~ 현재. 주식회사 장민이앤씨 상임감사

2023.11.1. ~ 현재. 서영주정주식회사 비상임감사

상 훈

2002. 8. 28 대통령 표창

2021. 8. 28. 홍조근정훈장

공직후보자 병역신고사항

- 공직후보자병역사항신고서
- 본인 및 직계비속의 병역사항
- 병적증명서

최근 5년간 국세·지방세 납부 및 체납에 관한 사항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소득금액증명
- 납부내역증명
-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 납세(체납)증명서